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2
------	-----

2016. 3. 3.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월 28일, 권미경의원(찬성14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6. 3. 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권미경 의원)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법령의 기준에 따라 확대해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타당성을 비롯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운영중인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개요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지방공기업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
- 법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지정·고시, 정관, 임직원의 인사, 예산, 재정지원, 지도·감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 서울시(이하 “시”)에는 현재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14개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시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2015년 7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임면, 지도·감독, 평가, 경영진단 관련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임.

- 특히, 이 조례 제4조와 제5조는 설립 타당성, 임원의 해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는 이 규정에 따라 2015년 5월 13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6월 서울디지털재단을 포함한 2개 신규 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최근까지 모두 5차에 걸쳐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횟 수	일 시	안 건
제1차	'15. 6. 4	○위원 위촉 및 신규 재단(서울디지털재단, 50+재단) 설립 검토
제2차	'15. 6. 12	○신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심의·의결(서울디지털재단, 50+재단)
제3차	'15. 9. 10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심의·의결
제4차	'15. 12. 17	○ '15년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 ○ '16년도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 선정
제5차	'16. 2. 3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심의의결

- 현재 심의위원회는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인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3), 시의회 추천 위원(3), 각계 전문가 중 위원장 추천 위원(7)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확대(안 제4조)

- 안 제4조는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가운데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재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법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로 평가됨.
- 시가 당초 법에서 정한 것보다 작은 규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것은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됨.
- 그러나,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확대하더라도 당초 시가 기대한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크게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위원 정수의 확대에 따라 노동계 인사를 포함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르게 위원으로 위촉해 각종 심의·의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라. 종합의견

-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타당성부터 임원의 임면, 경영진단과 실적평가를 포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투명성 확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외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성 강화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안 제4조와 같이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확대해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는 이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3명” 을 “1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7명” 을 “9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 ----- ----- ----- <u>13명</u> ----- ② (생략) 1. ~ 2. (생략) 3. ----- ----- ----- <u>7명</u> ----- ③ ~ ⑦ (생략)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 ----- ----- ----- <u>15명</u>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u>9명</u> ----- ③ ~ ⑦ (현행과 같음)